

일시 : 2017.5.24.(수) 16:00
장소 : 협업카페(성북구청 11층)

- 2017년 5월 (제43차) -
성북구 인권위원회 회의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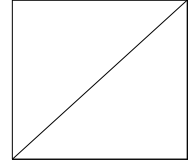
성북구 인권위원회

목 차

1	보고사항	-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 인권영향평가 결과	1
1	보고사항	조례 제·개정 인권영향평가 시행 결과보고	15
2		인권위원회 간담회 개최결과	16
3		재개발 인권영향평가 시범실시 연구용역	17
4		- 제19대 대통령 선거 -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	18
5		『제 11기 주민인권학교』 헌법의 재발견 운영	20
6		-세상의 편견에 맞선 흑인 여성들의 이야기- 영화 <히든피겨스> 관람 실시결과	21

【공개】

성 북 구
인권위원회



의안번호	
보 고 연 월 일	2017. 5. 24.(수)

보
고
사
향

**-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
인 권 영 향 평 가 결 과**

보고자 | 성북구 감사담당관(인권센터)

목 차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 입법예고	3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9

※ 조례(규칙) 제·개정(안) 내용 변동 첨부 : 붙임자료 참조(별첨)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성북구에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시행계획 등 (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안 제7조)
- 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8조)
- 라. 위원회 회의 등 (안 제13조)
- 마. 저출산극복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 안 제18조)
- 바. 출산축하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 안 제26조)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여성가족과)

- 조례·규칙 제·개정용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만들기 조례		
관련규정 (고시, 훈령, 규정, 지침, 협약 등)			
입법일정 (예정)	관계부서 협 의	대상부서	
		협의기간	
	입법예고	2017. 4. 13 ~ 2017. 5. 13(20일간) 매체 : 공보(구보), 기타(구 홈페이지)	
	조례·규칙 심 의 회	2017. 5월	
	의회상정	2017. 5월	
첨부자료	필수자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만들기 조례	
	기타자료		
※ 검 토 결 과			

작 성 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여성가족과	행정8급	이 소 리	2241-2584

「※」 란은 기재하지 말 것

인권영향 점검표(1) 조례·규칙 제·개정용

※ 해당사항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질 문	응 답		비 고
권리 침해	관련조항에 권리침해 요소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사용된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 (인권침해적 용어의 사용,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 등 점검)	① 예		
		② 아니오	○	
주민 참여	제개정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① 예	○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
		② 아니오		
구제 수단	재·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기대 효과	재·개정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작성요령

가. 제·개정되는 조례·규칙의 시행 전 고려사항, 시행효과 등을 판단하여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 응답란의 ‘예’ 또는 ‘아니오’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에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 외,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기재 바라며, 입증자료 등이 있을 시 자료명 기재 바랍니다.

※ 조례(규칙) 제·개정(안) 내용 별도 첨부 : 붙임자료 91 참조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공통)점검표
2017-10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날고 키우기 좋은 환경만들기 조례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부 서 점검표 작성	1. 해당업무 담당자는 주어진 인권영향점검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업무의 인권영향평가표를 검수하기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권 리 침해	3.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운영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해당업무 담당자는 사용하는 용어에 인권침해적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엄밀히 점검하여, 인권 침해적요소가 없도록 조치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여	5.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관련정보가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구 제 수 단	7.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의 권리침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여	8. 해당정책은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상당한 효과기대 <input type="checkbox"/> 약간의 효과기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9. 해당정책 수행 시 주민들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가?	인권침해요소가 있으므로주의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침해요소 없음 <input type="checkbox"/>

인권영향평가(조례 및 규칙 제·개정용)점검표

(2017. 4. 28.)

조례 및 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만들기 조례
검 토 항 목	
<p>1.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피해를 보거나 인권 및 권리가 침해되는 주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p> <p><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일부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판단됨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별지참조)</p>	
<p>2.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내용에 대해 인권담당부서에서 주민들의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향상을 위하여 별도로 요청할 내용이 있는가?</p>	

인권영향평가 검토 의견서

항 목	검 토 의 견	비 고
<p>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만들기 조례</p>	<p>1. 저출산 극복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양성평등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이 조례의 근거가 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3항에도 명시되어 있음.</p> <p>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그러나 관련된 조항 - 정의, 구청장의 책무,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양성평등한 가족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음. 이 조례의 추진 필요성이나 추진 근거에 따르더라도 “양성평등한 가족가치의 실현과 제도적 장치”는 법적 근거로 명시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임.</p> <p>2. 조례가 구현하려고 하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가 무엇인지 정의에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므로 아래와 같은 항목이 추가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 따른 출산 정책 -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3항의 건강가족정책 -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조례안 제7조) - 임신·출산·보육·교육·일자리·주거를 지원하는 정책(조례안 9조) <p>3.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양육에 좋은 환경” “마음 편히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등으로 혼용 표현되어 혼란스러움.</p>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직원에게 양질의 업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편의 및 근무능률 증진에 기여하고자 성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적용범위(안 제2,3조)

- 장애인 공무원의 적용범위

나. 교육훈련(안 제6조)

- 장애인공무원 능력개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확대
-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훈련 경비 지원

다. 지원신청(안 제7조)

-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요청

라. 지원내용(안 제8조)

- 지원결정에 따른 직접 수행 제공 항목 구체화
-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
-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 그 밖의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전문기관 운영 등(안 제11조)

-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 및 제출할 수 있음

가. 관계법령 및 근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력증진을 위한 사항)」

제77조(능력증진을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 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기준인건비 범위 내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 2017. 4. 19. ~ 2017. 5. 9.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중 제출의견 및 처리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서식 (담당부서)

- 조례·규칙 제·개정용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관련규정 (고시, 훈령, 규정, 지침, 협약 등)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사항)		
입법일정 (예정)	관계부서 협 의	대상부서	해당없음
		협의기간	해당없음
	입법예고	2017. 4. 19. ~ 2017. 5. 8까지(20일간) 매체 : 구보, 구 홈페이지, 게시판	
	조례·규칙 심 의 회	2017. 5	
	의회상정	제250회 정례회 (6.5~6.28)	
첨부자료	필수자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기타자료		
※ 검 토 결 과			

작 성 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행정지원과	행정7급	민중원	2241-4315

「※」 란은 기재하지 말 것

인권영향 점검표(1) 조례·규칙 제·개정용

※ 해당사항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질 문	응 답		비 고
권리 침해	관련조항에 권리침해 요소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사용된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 (인권침해적 용어의 사용,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 등 점검)	① 예		
		② 아니오	○	
주민 참여	제개정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① 예	○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② 아니오		
구제 수단	제·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기대 효과	제·개정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작성요령

가. 제·개정되는 조례·규칙의 시행 전 고려사항, 시행효과 등을 판단하여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 응답란의 ‘예’ 또는 ‘아니오’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에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 외,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기재 바라며, 입증자료 등이 있을 시 자료명 기재 바랍니다.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공통)점검표
2017-11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부 서 점 검 표 작 성	1. 해당업무 담당자는 주어진 인권영향점검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업무의 인권영향평가표를 검수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권 리 침해	3.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운영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해당업무 담당자는 사용하는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엄밀히 점검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도록 조치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 여	5.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관련정보가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구 제 단 수	7.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의 권리 침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 여	8. 해당정책은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상당한 효과기대 <input type="checkbox"/> 약간의 효과기대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9. 해당정책 수행 시 주민들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가?	인권침해요소가 있으므로 주의필요 <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요소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영향평가(조례 및 규칙 제·개정용)점검표

(2017. 4. 28.)

조례 및 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검 토 항 목	
<p>1.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피해를 보거나 인권 및 권리가 침해되는 주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p> <p><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일부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판단됨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필요시 별지사용)</p>	
<p>2.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내용에 대해 인권담당부서에서 주민들의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향상을 위하여 별도로 요청할 내용이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별도 요청사항 없음</p>	

조례 제·개정 인권영향평가 시행 결과보고

1. 운영절차

1	해당부서 점검표 작성	⇒	인권센터 평가 의뢰
2	인권센터 평가	⇒	인권위원회 심의 상정
3	인권위원회 심의	⇒	원안동의, 수정동의, 권고
4	해당부서 심의 결과 수용 여부 결정		
5	인권위원회 수용 여부 보고		성북구 의회 보고

※ 위원회 심의 후 심의결과 전달 표현

원안동의	인권과 관련 없는 사안
수정동의	인권센터 의견에 동의하여 권고 하지 않음
권 고	인권위원회가 의결하여 권고문을 구청장에게 보냄
조 정	해당부서가 인권위원회 출석하여 제안 설명할 때 인권위원회가 제시하는 수정 사항에 대해 수용하기로 조정하면 별도의 권고를 하지 않음

2. 심의내역

조례 제·개정 인권영향평가 시행 결과(2013년 ~ 2017.3월)

⇒ 138건 심의, 28건 권고

심의	권고				
		수용	부분수용	미수용	기타
138건	28건	12건	7건	6건	3건

		연도				
		2017	2016	2015	2014	2013
총계						
심의	138건	8건	30건	43건	30건	27건
권고	28건	2건	3건	12건	7건	4건

- 2017년 3월 -
성북구 인권위원회 간담회 개최결과

1. 회의개요

- 일 시 : 2017. 3. 13(월) 16:00 ~17:00
- 장 소 : 성북배움터(구청 3층)
- 참 석 자 : 8명(김경옥,김지희,박다혜,윤정섭,이민영,이진수,하장호,전문수)
※ 정족수 부족으로 정례회가 아닌 간담회로 진행
- 주요안건
 - 조례 제·개정안 인권영향평가 의견교환 (조례안 4건)
 -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
 - 권고 미수용에 대한 의견교환

2. 회의결과

- 조례 제·개정안 인권영향 평가 논의
 - 서울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외 2건
⇒ 이견 없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 동행카드 지원 조례안
⇒ 주민등록 기준일 경우 미등록 이주 아동은 카드 사용에 제외 될 가능성 있음. 인권증진기본조례 제2조 주민의 정의에 따르면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보완이 필요함
- 권고안 미수용에 대한 자료 요청
 - 문화체육과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
⇒ 권고 미수용에 대한 관련 자료 요청

재개발 인권영향평가 시범실시 연구용역

1. 추진배경

재개발 사업은 지역 모든 주민의 생존권, 주거권, 교육권 등 다양한 영역의 인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업인 바, 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인권증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24조 1항 2호
 - ‘주민이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하는 사업의 계획’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실시 규정

2. 용역개요

- 용역명 : 재개발 인권영향평가 시범실시 연구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5월~12월)
- 소요예산 : 93,080,000원(금구천삼백팔만원)
- 과업범위 및 내용
 - 공간적 범위 : 성북2구역, 삼선5구역
 - 과업내용
 - 재개발 사업이 주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 전반적 분석
 - 토지 등 소유자 및 주거세입자, 상가세입자의 주거(영업)의 안정성, 주거비부담 가능성, 주거의 질 개선 가능성 조사
 - 재정비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 의사결정 참여과정, 투명한 정보 공개 등 재개발 사업이 미치는 영향 평가
 - 재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주거 이전 대책 상담 조사

- 제19대 대통령 선거 -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

1. 조사기간

- 2017. 3. 9.(목), 3. 10.(금), 3. 20.(월), 3. 23.(목), 10시 ~ 17시

2. 대상 투표소

- 총 116개소(사전투표소 : 20개소, 본투표소 : 96개소)

3. 조사자

- 민관협력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단, 인권센터
 - 인권센터 시민위원(6명), 인권센터 소속 공무원(2명)

4. 조사결과

■ 투표소로 부적합한 장소

1 사전투표소(9개소)

- 돈암1동, 돈암2동, 정릉1동, 정릉2동, 정릉3동, 정릉4동, 길음2동, 월곡2동, 장위2동
※지하 또는 2층 이상이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 접근이 어려운 투표소

2 본투표소(9개소)

- **삼선동 제1투표소(삼선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 제2투표소(성북정보화센터 2층 청소년공부방)**
 - 제1투표소, 제2투표소 : 엘리베이터 미설치, 2층으로 투표소 접근성이 매우 낮음
 - 제1투표소 : 계단이 협소하며 경사 가파르며 장애인 화장실 매우 협소, 장애인 접근 불가능한 상태
- **돈암1동 제4투표소(고명중학교 1층 가사실)**
 - 투표소 진입 전 3단 계단이 있어 휠체어 진입 불가
- **안암동 제2투표소(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 1층이지만 계단을 올라가야 하고 경사로 미설치
- **정릉4동 제2투표소, 제3투표소(지하1층 프로그램실, 1층 민원실)**
 -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용 불편으로 인해 장애인 접근성이 매우 낮은 편, 지하 프로그램실은 장애인 접근 불가
- **길음2동 제1투표소(길음2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 제3투표소(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경로당)**
 - 엘리베이터 미설치, 2층으로 투표소 접근성이 매우 낮음
- **석관동 제7투표소(래미안 석관아파트 관리동 2층 회의실)**
 - 엘리베이터 미설치, 2층으로 투표소 접근성이 매우 낮음

■ 선관위 요청 사항

선거공보물에 사전투표소 접근성 현황 첨부하여 공지 필요
(사전투표소 인권영향평가 결과 참조)

제11기 주민인권학교 운영

1. 추진개요

- **참여대상** : 인권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 **교육인원** : 40명
- **교육장소** : 성북구청 배움터 (구청 3층)
- **교육기간** : 2017. 5. 23(화). ~ 5. 30.(화)
(총 2강, 매주 화 19:00~22:00)

2. 강의내용

■ 교육내용

회 차	일시 및 강의주제	강 사
1강	○ 5. 23(화)19:00~22:00 헌법의 인문학적 이해 I - 대한민국 기본정신, 자유의 보장	박홍순 (헌법의 발견 저자)
	○ 5. 30(화)19:00~22:00 헌법의 인문학적 이해 II - 평등한 삶, 인간다운 생활 보장	

■ 강사소개

- 박홍순 / 인문학 저자, 유레카논술연구소 소장
- 주요 저서 : 《사유와 매혹》(1, 2권), 《히스토리야 대논쟁》(1~5권), 《헌법의 발견》 등

인권영화 [히든피겨스] 상영

1. 추진배경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인권감수성을 함양하고 인권친화적 조직 분위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인권영화 상영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10조 제1항
-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

2. 관람개요

- 관람영화 : 『히든 피겨스(Hidden Figures, 2016)』 테오도어 멜피 감독
 - 2016 아카데미 작품상, 여우조연상 수상
- 관람일시 : 2017. 4. 27(목), 28(금) 15:30~17:40
- 관람장소 : 아리랑시네센터 2관

3. 관람결과

- 참석인원 : 271명
 - 2017. 4. 27 (목) 1회차 : 111명
 - 2017. 4. 28 (금) 2회차 : 160명

❖ 제44차 인권위원회 정례회의 일정

- 일 시 : 2017년 6월 14일(수) 16:00
- 장 소 : 성북구 성북배움터